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20

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 : 임종득 • 유용원 • 강선영

김예지 · 강대식 · 박수민

박정하 • 유영하 • 이헌승

인요한 · 조승환 · 박대출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계급별로 연령정년을 정하고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병력구조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예비역의평시 운용 등을 통하여 예비전력을 정예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41조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322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의 제목 "(퇴역)"을 "(퇴역 및 예비역)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4호에 해당하는 여군"을 "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41조(퇴역) 다음 각 호의 어느 | 제41조(퇴역 및 예비역)     |  |  |
|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, 준사관 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. 다만, 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제4호에 해당하는 여군이 퇴역    | 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 |  |  |
| 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  | <u>당하는 사람</u>      |  |  |
|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.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1. ~ 4. (생 략)      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|  |  |